#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구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시설 및 관계인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3호~제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지상 이전 시 관계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충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이전 설치 등으로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신설되는 용어를 정의
- 안 제5조제3항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시 예산 지원의 근거 신설.
- 안 제5조제4항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시 예산지원의 근거 신설.

❍ 검토 결과

-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2023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자동차가 2,250여만대에서 2,550여만대로 300여만대가 보급되어 약 13% 증가하였으나 전기자동차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450%의 폭발적 보급률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은 해마다 피해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의 경우 화염 방향이 주로 위를 향하는 반면,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는 화염 방향이 주로 수평으로 진행함. 따라서 바람이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는 대규모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선제적 화재 예방 등의 방법으로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규정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함으로 판단됨.

-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403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이성수、이순우、유승용 이규선 의원(4인)

## 1. 제안이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구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및 관계인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지상 이전 시 관계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소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이전 및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 <신 설> |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 <신 설> |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 4. -------- 자동차 ---------- |

| | |
|---|---|
| 한다)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운영 방안 | ----------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br>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 <신 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이전 및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

| | |
|---|---|
| |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③ ~ ⑤ (생 략) |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 제7항----------<br>----------<br>----------<br>----------<br>---. ----------<br>----------<br>----------<br>----------<br>----------<br>----------<br>--------. |
| 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 ⑨ 제7항----------<br>----------<br>----------<br>----------. |